

[특집]

## 수도회 설립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

정재천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도회 신부]

I. 서론

II. 본론

제1장 수도회 설립의 출발: 설립자

제2장 수도회 설립의 사전 법적 요소

제3장 수도회 설립의 법적 절차

III. 결론

### I. 서론

####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본 연구는 수적으로나 교회 역사상 활동의 폭으로나 축성생활회를 대표하는 수도회(修道會)의 교회법 체계 안에서의 설립을 연구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법 조문을 근거로 수도회 설립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교회법이 요구하는 수도회 설립의 법적 요건과 법적 절차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교회법 안에서 수도회 설립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수도회가 고유한 카리스마에 따른 사명을 수행하며, 교회의 건설·성장·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 이 글은 2024년 2월 가톨릭대학교 교회법 대학원 석사 논문 「수도회 설립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을 요약한 글임.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이 채택한 연구 방법은 수도권 설립에 관련한 일련의 교회법 조문의 분석적 고찰이다. 그리고 수도권 설립의 실체를 알아야 하므로, 수도권 설립에 관한 교황청의 관행도 고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된 연구 자료는 교회법 조문과 교황청의 관행 등이다.

제1장에서는 수도권 설립의 출발인 설립자(또는 창립자)와 그가 받은 카리스마에 대해 고찰한다. 모든 법률행위에는 행위자가 있어야 하고, 수도권 설립이라는 법률행위에는 행위자인 설립자가 있기 때문이다.

제2장의 주제는 카리스마의 식별을 포함하여 수도권 설립이라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적 요소이다. 수도권은 대체로 단체를 통해 설립되는 경우가 많기에, 본 논문에서는 단체를 통해 수도회가 설립되는 경우를 연구한다. 수도권 설립은 (수도회 설립을 지향하는) 그리스도교 신자 단체에서 출발할 수 있다.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수도회의 탄생 과정이 이를 보여 준다. 수도회가 교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설립되려면 교회 해당 권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째 법적 요소는 수도회의 고유법 특히 회헌의 제정과 승인이다. 두 번째 법적 요소는 교회 관할 권위에 의한 카리스마의 식별과 승인이다.

제3장에서는 법적 진행 절차에 관련된 보다 세분된 주제들을 고찰한다. 특히 축성생활회 설립 절차에 관한 제579조의 개정의 내용과 배경이 중요하다. 축성생활회가 개별 교회에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축성생활 자체가 보편 교회의 생명과 거룩함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축성생활의 성소는 개별 교회를 위한 성소를 초월하여, 보편 교회를 위한 성소라는 이유와 함께 이 조항의 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II. 본론

### 제1장 수도회 설립의 출발: 설립자<sup>1)</sup>

모든 법률행위에는 법률행위의 행위자, 즉 주체가 있다. 수도회 설립은 교회법상 법률행위이므로 행위자가 있다. 교구장 주교는 수도좌의 사전 서면 허가를 받아 수도회 설립을 승인하는 관할권자로서 수도회의 설립자와는 구별된다. 설립의 발단이 되는 설립의 출발로서 설립자에 대해 고찰해 보자.

#### 1. 설립자<sup>2)</sup>는 누구인가?

1) 수도회 설립은 교회법상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법률행위(juridical act)에 관한 일반규범(제124조~제128조)’에 의해 규제된다. 제124조는 교회법상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고, 법률행위의 유효성에 관한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법적 능력’(legal capacity), ② 법률행위의 본질적 요소, ③ 실정법(positive law)에서 요구하는 형식(formalities). ‘수도회 설립의 주체는 설립자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설립자가 수도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회는 교회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회 설립이 설립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수도회 설립의 출발은 설립자’이다. 이에 대하여 제1장에서 다룬다. 수도회 설립의 사전 법적 요소와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제2장과 제3장에서 각각 논한다. Cf. Michel Thériault, “CC.124-128”, i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Vol.I(canons 1~203)*, Ángel Marzoa / Jorge Miras / Rafael Rodríguez-Ocaña(eds.), Illinois(USA): Midwest Theological FORUM, 2004, p.800.

2) ① *fondatore*(이태리어)·*founder*(영어)를 은사적 측면에서는 ‘창립자’라고 번역하고, 교회법상 축생생활회를 설립하는 측면에서는 ‘설립자’라고 번역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fondatore*를 ‘설립자’라고 번역한다. ② 한국교회 안에서는 설립자에 대한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회는 공법인으로서 법 자체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교회법 체계 안에서는 설립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설립자가 수도회를 설립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 공동체가 수도회를 설립하는 것도 아니며, 교회가 수도회를 설립하는 것도 아니다. 수도회는 수도회 설립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교회를 통해 법 자체로 설립된다. 따라서 ‘*fondatore*’를 설립자라 표현하는 것도 적절한 것은 아니다. ‘*fondatore*’는 은사를 받은 존재로서는 창립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교회법 체계 안에서 회가 공법인으로 시작하면서 창립자를 설립자라고 언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창립자 또는 설립자란 용어의 고유한 의미를 분석하면 용어상 애매함이 남는다.

### 1.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설립자 언급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수도회 설립자의 원체험, 즉 수도회 최초의 영감(Ispirazione)으로 돌아가는 수도 생활의 쇄신을 강조했다. 설립자란 그들이 설립한 수많은 회의 신학적·교회법적 설립의 본성과 무관하게 즉 Ordo 수도회이든, Congregatio 수도회이든 재속회이든 사도생활단이든, 자신의 후세에 하나의 카리스마로 일치되고 교회의 선익을 지향하는 영적인 가족을 남긴 인물이다.<sup>3)</sup>

### 1.2. 설립자의 필수 조건과 영적 풍요

설립자에게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① 설립자는 수도회 설립의 영감을 받아야 한다. 설립자는 복음적 삶이라는 ‘확정된 유형’(un determinato genere)의 삶을 선택하고,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기 위해 자신을 봉헌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삶과 봉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카리스마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자는 많은 추종자(제자)를 모아 단체를 설립해야 한다. 이런 삶과 봉사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바로 그 카리스마를 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 ③ 설립자는 수도회 명칭을 결정해야 한다. ④ 설립자는 수도회 회헌이나 규칙을 정해야 한다. 설립자는 자신의 부르심을 글 또는 말을 통해 핵심적인 규칙(예: Basilio, Agostino, Benedetto 등)을 설명해야 한다.<sup>4)</sup>

설립자들은 자신들의 탁월한 거룩함으로써 영적 풍요라는 선물을 세상에 전한다. 수도회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에게 ‘아버지들 또는 어머니들’이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그러나 수도자들은 그가 속한 수도회의 설립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설립자와 그의 영적 풍

3) Cf. Juan Manuel Lozano Nieto, “Fondatore”, in *Dizionario teologico della vita consacrata*, Tullo Goffi / Achille Palazzini(eds.), Milano(Italia): Editrice Ancora Milano, 1994, pp.756-757.

4) Cf. Juan Manuel Lozano Nieto, *op.cit.*, p.757; Cf. Victor George D’Souza, “Erection of a Religious Institute of Diocesan Right: Law and Praxis”, *Studies in Church Law* 1(2005), 56.

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sup>5)</sup>

## 2. 설립자의 카리스마<sup>6)</sup>

### 2.1. 의미와 특징

설립자의 카리스마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하느님께서 설립자들(남녀)에게 자비롭게 베푸시는 성령의 선물로서, 교회 내에 새로운 축성생활회들이 탄생하도록 하는 설립자들 안에 있는 특정한 능력이다.<sup>7)</sup>

카리스마와 영성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카리스마는 하느님의 무상의 행위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노력으로 획득할 수도 없고, 제자들에게 전달될 수도 없다.<sup>8)</sup> 반면 영성은 성령의 신적 주도권에 대한 인간의 응답 행위라는 측면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영성은 유사할 수 있고 제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sup>9)</sup> 카리스마를 부여하신 성령께서는 카리스마를 통해 설립자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다. 설립자의 제자 그룹은 이러한 성령의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탄생한다.<sup>10)</sup>

### 2.2. 설립자의 카리스마와 설립의 카리스마

수도 생활에 관한 교회 문헌들은 ‘설립자들의 카리스마’와 ‘회의 카리스마’(=설립의 카리스마=설립하는 카리스마)를 구별하여 언급

5) Cf. Juan Manuel Lozano Nieto, *op.cit.*, p.763.

6) χάρισμα(그리스어)는 χάρις(은총 또는 호의)에서 유래하고, 신적 은총의 대상이자 결과를 의미하는데, 모든 계층의 신자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축복을 가져오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Antonio Romano, “Carisma”, in *Dizionario teologico della vita consacrata*, Tullo Goffi / Achille Palazzini(eds.), Milano(Italia): Editrice Ancora Milano, 1994, p.169.

7) Antonio Romano, “Carisma”, *op.cit.*, p.178.

8) *Ibid.*, p.179.

9) Cf. *Ibid.*, p.179.

10) Cf. Juan Manuel Lozano Nieto, *op.cit.*, p.759.

한다. 엄밀히 말하면, 설립자들의 카리스마와 수도회 설립의 카리스마는 같은 것이 아니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설립자의 모든 카리스마가 직접적으로 수도회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기적을 행하는 능력, 초자연적 은총 등). 우리는 어떤 하나의 영성의 창시자로서 ‘설립자의 개인적 카리스마’(예: 프란치스칸, 도미니칸, 이냐시안 등)와 ‘축성생활회 설립의 카리스마’를 구별해야 한다.<sup>11)</sup>

‘설립자의 카리스마’가 아닌 ‘설립의 카리스마’가 제578조의 ‘세습자산’이다. 교회법은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578조의 ‘세습자산’은 ‘공동체적 카리스마’ ‘수도회의 카리스마’와 일치한다. ‘세습자산’은 무엇보다 설립자의 의도와 계획을 포함한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수도회를 설립할 때 설립자의 모든 의도와 계획이 수도회의 세습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직 ‘교회에 의해 승인된 설립자의 의도와 계획’만이 수도회의 세습자산이 된다.<sup>12)</sup>

### 3. 소결론

수도회 설립의 외적인 출발은 설립자이지만, 실질적인 주도권은 성령께 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생명의 주님으로서 설립자를 세상에 내시고 그를 수도회 설립을 위한 인간적인 도구로 부르시기 때문이다. 교회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성령께서는 교회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설립자가 수도회를 설립하기에 합당한 카리스마를 갖추기를 원하신다. 설립자는 이러한 성령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카리스마를 수용하고 하느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수도 가족의 영적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된다. 설립자가 수도회를 세우는 과정에는 십자가, 즉 시련과 역경이 따르는데 이는 교회가 설립자와 그가 받은 카리스마의 진정성을 식별하는

11) Cf. Y. Sugawara, “Concetto teologico e giuridico del ‘carisma di fondazione’ de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 *Periodica* 91(2002), 250-251.

12) Cf. Victor George D’Souza, “Erection of a Religious Institute of Diocesan Right: Law and Praxis”, *Studies in Church Law* 1(2005), 61-62.

하나의 과정이다. 설립자의 십자가는 설립자와 그의 카리스마를 성장·성숙시킨다.

## 제2장 수도회 설립의 사전 법적 요소

### 1. 수도회 설립을 지향하는 그리스도 신자 단체의 설립

#### 1.1. 수도회 설립의 표징

수도회 설립은 공동체 설립의 가시적 표징과 함께 시작된다. 성령께서 신자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들은 기꺼이 응답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설립자는 기도와 식별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러한 부르심이 성숙할 때, 설립자는 교구장 주교와 대화를 시작한다. 교구장 주교는 그들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또는 교구의 한 사제 또는 수도자를 지명하여 이 그룹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 임무를 맡은 사람은 훌륭한 사목적 감각, 식별력, 수도회 설립을 위한 교회법적·시민법적 필요조건들과 수도 생활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을 갖추어야 한다.<sup>13)</sup>

#### 1.2. 그리스도 신자 단체의 설립

수도회 설립의 첫 단계는 그리스도 신자 단체의 설립이다. 이것은 수도회 설립에서 중요한 단계이다. 교구는 이러한 단체를 받아들여 돌본다. 이 단체의 회원들은 함께 살면서 수도회를 지향하는 단체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회원들을 공적으로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수도복을 입고, 본당을 중심으로 모임을 하고, 기도를 통한 섬김과 봉사를 하며 교구의 공적 봉사나 공동체의 여러 사안에 참여한다. 이 신자 단체가 교구에서 이러한 ‘공적 현존’의 모습을 보여

13) Cf. Amy Hereford, *See I am making something new: new institutes, diocesan hermits and consecrated virgins and new forms of consecrated life*, Saint Louis(USA): RELIGIOUS LIFE PROJECT, 2018, pp.62-63.

출 때, 그리스도 신자 단체를 교회법적으로 설립할 시기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 신자 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단체의 주 사무소가 위치한 교구의 교구장 주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참조: 제312조 2항). 이 단체는 공적이거나 사적일 수 있다. 만약 설립의 본성(nature), 목적(purpose), 정신(spirit), 성격(character) 그리고 수도회 또는 재속회 또는 사도생활단이 되려는 의도(intent)가 명확하고 확고하다면 일반적으로 그 단체는 공적 단체가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명확성과 확고함이 부족하다면 사적 단체를 설립하여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나중에 공적 단체가 되는 것이 현명하다.<sup>14)</sup>

단체의 정관(statutes)에는 ‘단체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교구설립 수도회가 될 의도로 설립되었음’(the Association is founded with the intention of becoming a religious institute of diocesan right)을 명시해야 한다.<sup>15)</sup> 이에 따라 단체의 설립 교령에는 ‘장차 교구설립 수도회로 설립될 것을 전망하면서’(in the view of being erected in the future a religious institute of diocesan right)라는 구절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 단체의 회원들은 ‘수도자와 똑같이’(as if they were religious)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수도회 설립을 지향하는 그리스도 신자 단체의 구체적 목적과 지위는 명확해지고 교회 내 다른 신자 단체와 구별이 가능해진다.<sup>16)</sup>

이 단체는 장차 설립되기를 지향하는 수도회의 영성과 구조를 모방하면서, 카리스마의 명확성을 추구하고, 카리스마에 합당한 법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 단체의 회원들은 사적 서원을 하고, 특정 수도복을 입고, 고유한 통치기구, 회의(chapters), 장상들(superiors), 평의회(councils), 수련자, 유기서원자, 종신서원자가 있고 행정 중심이 위치한 교구뿐만 아니라, 다른 교구에 수도원이 있을 수 있다. 이 단체가 그리스도교 신자 단체로 남아 있는 동안 ‘시험적으로 승인된 정관’(statutes ad experimentum)은 추가로 개정될 수 있다. 주교, 설립자, 그의 첫 제자들이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

14) Cf. *Ibid.*, pp.63-64.

15) Cf. *Ibid.*

16) Cf. Victor George D'Souza, *op.cit.*, 63.

다.<sup>17)</sup>

### 1.3. 교회법적 형태의 정관 작성

단체의 정관에는 제304조가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 신자 단체는 다른 신자 단체와 달리 장차 수도회 설립을 전망하는 단체이므로, 정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식을 서술해야 한다(참조: 제577조, 제578조).<sup>18)</sup> 이 단체의 정관은 카리스마를 정의하며 단체의 정체성과 구체적 모습을 표현해야 한다. 이 단체는 ‘여정 중에 있는 단체’(le associazioni in itinere)로서 아직 축성생활회나 사도생활단 또는 새로운 형태의 축성생활회로 승인되지는 않았다.<sup>19)</sup> 그러므로 이 단계에 있는 단체의 정관은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 축성생활 고유의 요청에 따른 모든 의무, 단체의 내부 권위와의 관계, 회원들이 받아들이는 유대, 그들에게 가능한 ‘관면’ ‘공동재산의 관리’를 다루지는 않는다.<sup>20)</sup>

### 1.4. 그리스도 신자 단체에 대한 교황청의 관행

수도회성의 관행(praxis)에 의하면, 수도 공동체가 되기를 열망하는 공동체들은 제298조~제3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서원을 하는 회원과 함께 ‘그리스도 신자 공적 단체’로서 출발한다.<sup>21)</sup> 그리스도

17) Cf. *Ibid.*, 62-63.

18) Cf. Sharon Holland, “Religious and Bishops as Custodians of Communion”, *The Jurist*, Vol 62(2022), 314.

19) Cf. Conferenza Italiana Superiori Maggiori, *op.cit.*, p.205.

20) S. Recchi, “Assunzione dei consigli evangelici e consacrazione di vita nelle associazioni”, *Quaderni di diritto ecclesiale* 12(1999), 343을 Conferenza Italiana Superiori Maggiori, *Questioni attuali per la vita e il governo de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7, p.205에서 재인용.

21) Canon 298-326; CARA, *Emerging Communities of Consecrated Life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the Apostolate, Georgetown University, 2006), 4; Congregation for Institutes of Consecrated Life and Societies of Apostolic Life,

신자 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교구장 주교에게 ‘정관(statutes)의 복사본’ ‘공동체의 약사(略史)’ ‘회원과 재정 상태에 대한 통계’와 함께 ‘단체 설립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교는 그 정관의 승인과 동시에 혹은 승인 직후에, ‘단체 설립 교령’(a decree of erection of the Association)을 발한다. 그 결과 이 단체는 교회의 공법인으로 설립되고, 이 단체의 ‘재산’은 교회의 재산이 되어 교회법 제5권 교회의 재산법 규정에 종속되며,<sup>22)</sup> ‘교회의 이름’으로 활동한다. 수도회성의 관행에 의하면 이러한 단체의 회원들은 정결, 가난 그리고 순명의 ‘사적 서원’을 할 수 있다(참조: 제1191조).<sup>23)</sup>

#### 1.5. 그리스도 신자 단체에 대한 교구장 주교의 감독 권한

그리스도 신자 단체는 교구장 주교의 ‘감독’하에 있다. 교구장 주교는 설립 교령을 발한 후 이 단체를 도울 ‘소통·연락·업무책임자(liaison)’ ‘담당 사제’(chaplain) 또는 ‘영적 동반자’(spiritual director)를 지명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이 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면밀히 관찰하게 한다. 동시에 교구장 주교는 이 단체의 ‘대표’(president)로 선출된 자를 추인하거나 제청된 자를 임명하거나 또는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 임명하기도 한다(참조: 제317조 1항). 이 단체는 재무 보고서를 포함한 연례 보고서를 주교에게 제출한다. 주교와 설립자는 이 보고서의 내용과 제출 시기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한다.<sup>24)</sup>

#### 1.6. 그리스도 신자 단체였다가 수도회로 설립된 사례

처음에 그리스도교 단체로 설립된 후에 시험기를 거쳐 나중에 수도회로 설립 승인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수회(Society of Jesus), 프란치스코 수도회(Order of Friars Minor: OFM), 도미니코 수도회(The

Procedure for Erecting a Religious Institute of Diocesan Right(Vatican: CICLSAL, 2007)을 Amy Hereford, *op.cit.*, p.65.에서 재인용.

22) 제116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1257조.

23) Cf. Amy Hereford, *op.cit.*, p.65.

24) Cf. *Ibid.*, pp.65-66.

Order of Preachers: Dominicans), 베네딕토 수도회(Order of Saint Benedict), 아우구스티노회(Order of Saint Augustine), 트라피스트회(Trappist Order: The Order of Cistercians of the Strict Observance), 카르멜회(Garment Order), 살레시오회(Society of St. Francis de Sales: S.D.B.), 구속주회(Congregation of the Most Holy Redeemer: C.Ss.R), 오라토리안(Oratorians) 등이다.<sup>25)</sup>

## 2. 회헌의 제정

### 2.1. 수도회 통치의 규범적 원천들

수도회를 통치하는 ‘규범들’은 다음과 같다. ① 교황청에서 제정·공포하여 주로 교회법에 규정된 ‘보편법 규범’ ② 수도자에게 관련된 규범으로서 교구장 주교 또는 주교 회의가 제정한 ‘특별법 규범’ ③ 수도 공동체가 작성하고 교회의 관할 권위가 승인한 ‘회헌’ (=근본규범) ④ 각 수도회가 제정한 ‘나머지 고유법 규범’이다. 제 587조는 전통적으로 마지막 두 가지 규범(즉 ③과 ④)을 가리키며, 주로 개별 교회의 특별법과 구별하려고 ‘고유법’(proper law)이라는 명칭을 선택했다.<sup>26)</sup>

### 2.2. 고유법의 핵심인 회헌

수도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수도회의 근본규범인 회헌을 제정한 후에 교구장 주교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도회와 관련된 법 규정은 크게 보편법과 회의 고유법으로 나뉜다. 수도회의 고유법에는 회헌(근본규범), 회칙, 지침들이 있다. 그 가운데 근본규범(Codex fundamentalis)인 회헌(Costituzioni)이 일반 단체의 정관처럼 회의 설립과 직접 관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회헌을 구체화한 세부 규정인 ‘회칙 혹은 지침’이 있다. ‘회칙과 지침’은 회헌에 어긋나게 제

25) [https://chat.openai.com/\(2023.4.25\)](https://chat.openai.com/(2023.4.25)).

26) Cf. Tomás Rincón-Pérez, “CC.573-606”, p.1505.

정될 수 없다. 회헌의 목적은 각 회의 부르심과 정체성(identità)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고 식별하기(tutelare)’ 위한 것이다.<sup>27)</sup>

## 2.3. 보편법상 회헌

### 2.3.1. 회헌의 내용(제587조 1항)

회헌은 회의 세습자산을 설명하는 본질적 요소(참조: 제578조)와 통치, 양성과 합체(incorporation), 거룩한 결연의 대상 그리고 회원의 규율(the discipline of members), 재산에 관계된 기본적인 규범들을 포함하고 있다.

통치에 관하여 회헌은 기본적 통치 구조, 총회의 소집과 참석할 자격, ‘책임자들·장상들(moderators)’의 구성과 임기, 평의회와 그 의사 결정의 효과, 지역 통치(local governance)의 모든 본질적 요소를 기술해야 한다.

양성과 합체에 관하여, 회헌은 양성의 다양한 단계, 각 단계의 필요조건들, 양성의 목적, 양성의 기간, 양성의 각 단계에 회원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관할 권위’, 유기서원과 종신서원의 법적 효과, 거룩한 결연의 고유한 대상인 복음적 권고, 유기서원 및 종신서원의 권리와 의무가 포함된다. 회헌은 또한 수도자들의 본질적인 요소들, 즉 영성 생활에서 주요한 요소들과 수도회 퇴회의 법적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재산 관리에 관하여 회헌은 ‘재산의 관리행위’(통상적 관리행위·중대한 관리행위·이례적 관리행위)를 위한 주요한 요소뿐만 아니라, 수도회의 고정적 세습자산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양도에 관해서도 그 중요한 내용(양도의 유효성과 합법성의 요건, 양도의 절차 등)을 규정해야 한다.

만일 교회법 조문이 어떤 요소가 수도회의 회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 그 요소는 ‘반드시’ 수도회의 근본규범에 명시되어야 한다. 만약 교회법 조문이 어떤 요소가 회의 ‘고유법’에 있

27) Cf. Luigi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vol.I, <sup>3</sup>2011, pp.708-709.

어야 한다고 가리킨다면, 그 요소는 수도회의 회헌이나 ‘회헌 이외의 고유법’에 규정될 수 있다.<sup>28)</sup>

### 2.3.2. 회헌의 승인과 변경(제587조 2항)

회헌은 교회에 대한 성령의 선물이므로, 회헌을 통해 성령의 선물이 보존되고 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회헌의 승인과 변경은 교회의 관할 권위에 유보된다.<sup>29)</sup> 회헌의 최초의 승인은 수도회를 설립할 때 발생한다. 수도회성은 ‘성좌설립 수도회’(성좌에 의해 설립되거나 승인된 회)의 회헌을 승인하고, 회헌의 변경을 합법적으로 ‘추인’(confirm)한다. ‘회의 본원’(principal seat of the institute)이 위치한 교구의 교구장 주교는 ‘교구설립 수도회’에 대해 성좌가 이미 관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도회의 회원들이 회헌의 변경을 원하면, 총회에서 투표했을 때 ‘2/3’의 찬성이 필요하고, 변경된 본문과 함께 청원서를 관할 권위에 제출해야 한다.<sup>30)</sup>

### 2.3.3. 회헌 구성의 두 원리(영적 요소와 법적 요소, 제587조 3항)

교회법은 회헌 작성의 두 가지 지침을 제시한다 ① 영적 요소와 법적 요소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회헌은 ‘수덕 생활의 안내서’(un manuale di ascetica)도 아니고 ‘법적 규범을 규정한 단순한 본문’(un semplice testo di norme giuridiche)도 아니다.<sup>31)</sup> ② 회헌 규범들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명확성(clarity), 정확성(precision), 경제성(economy)이 회헌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sup>32)</sup>

28) Cf. Rose M. McDermott, S.S.J., *op.cit.*, p.754.

29) Cf. Luigi Chiappetta, *op.cit.*, p.709.

30) Cf. Rose M. McDermott, S.S.J., *op.cit.*, pp.754~755.

31) Cf. Luigi Chiappetta, *op.cit.*, p.709.

32) Cf. Rose M. McDermott, S.S.J., *op.cit.*, p.755.

### 3. 카리스마의 식별과 그 기준

#### 3.1. 카리스마의 식별

성령께서 교회에 위탁하는 축성생활의 새로운 카리스마를 식별하고 복음적 권고에 따라 고정적으로 생활하는 형태를 확립하는 권한은(참조: 제576조) 교구장 주교와 그와 동등시되는 사람들에게 있다(참조: 제134조 1항, 제368조).<sup>33)</sup> 교구장 주교가 카리스마를 식별할 때 그는 ‘교도 행위’(un atto magisteriale)를 수행한다. 그는 단순히 교구의 ‘교구 직권자’(Ordinario del luogo)로서가 아니라, ‘주교단의 구성원’으로서, 즉 다른 주교들 및 로마 교황과 친교 안에서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구장 주교가 교구설립 수도회를 설립할 때, 축성생활회가 모든 교회를 위해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 때문에 개별 주교의 행위는 교도 행위로서 교회 전체에 관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설립자가 어느 한 수도회의 회원인 경우에도 식별 권한은 상급 장상(Superiore maggiore)에게 있지 않고, 오직 교구장 주교에게 있다. 그러나 수도자는 교구장 주교에게 말하기 전에 합법적 장상에게 허락을 요청해야 한다.<sup>34)</sup>

#### 3.2. 카리스마의 식별 기준

교도권의 문서들, 교회법 규범, 수도회성의 관행을 고려하여, 주교들에게 위탁된 카리스마 식별에 유용한 신학적·교회법적 기준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카리스마 식별의 첫 번째 기준은 카리스마의 ‘신적 기원’, 즉 진정성(autenticità)의 확인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가능한 증거를 통해 “그러한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비롯되는지의 여부, 성령에서 비롯되는 은사는 개인의 특별한 재능과 분리되지는 않지만 구별되는 것

33) Cf. Conferenza Italiana Superiori Maggiori, *Questioni attuali per la vita e il governo de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7, p.191.

34) Cf. *Ibid.*, p.192.

으로, 그것은 활동과 조직영역에서 명백히 드러난다”(MR<sup>35</sup>, n.51)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유효한 검증의 기준은 복음적 기준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마태 7,16). 실제로 카리스마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알아보는 것은 오직 사람들이 맺는 거룩함과 선이라는 결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sup>36)</sup>

카리스마 식별의 두 번째 기준은 교회에 대한 적극적 사랑이다. 카리스마의 진정성은 “교회 안에 어떤 불화도 일으키지 않으려는 교회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MR, n.51)에서 드러난다. 진정한 카리스마는 교회 안에 배타주의(particularismo)와 분리주의(divisione)를 거부한다. 진정한 카리스마는 근본적으로 하느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sup>37)</sup>

카리스마 식별의 세 번째 기준은 카리스마의 ‘독창성’(originalità)이다. 카리스마는 교회 현실에 진정한 새로움을 도입해야 하며, 기존의 유사한 현실과 비교해 볼 때 특수성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독창성은 보통 수도회의 ‘고유의 영성’(peculiare specificità)을 통해 표현된다. 이 고유의 영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관할 권위의 임무이다.<sup>38)</sup>

카리스마 식별의 네 번째 기준은 카리스마의 ‘특수성’(specificità)이다. 카리스마는 이미 존재하는 다른 카리스마들이나 축성생활의 선물들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카리스마의 독창성과 특수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거나 또는 이미 존재하는 회의 카리스마와 똑같은 것으로 드러나면, 주교는 하나의 새로운 회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러한 특성이 없다면 주교는 그룹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이미 존재하는 다른 회들로 보내는 것이 낫다.<sup>39)</sup>

35) *Mutuae Relationes*(상호 관계): 교회 안에서 주교들과 수도자들의 상호 관계를 위한 지침.

36) Cf. 교황청 문헌 *Enchiridion Vaticanum*, 2/1827.

37) Cf. Conferenza Italiana Superiori Maggiori, *op.cit.*, pp.193-194.

38) Cf. *Ibid.*, pp.194-195.

카리스마 식별의 다섯 번째 기준은 ‘카리스마의 필요성 또는 적어도 큰 유용성’이다. 모든 수도회는 교회에 대한 선물이기 때문에, 카리스마는 교회의 구체적 요청(필요)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축성생활의 새로운 카리스마가 가장 구체적이고 시급한 필요를 즉시 충족시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성 또는 유용성’이란 성령의 각 선물이 ‘고유한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각각의 카리스마는 사실 ‘공동의 유익’(참조: 1코린 12,7)을 위해 주어졌다. 그러므로 모든 카리스마는 교회의 ‘생명력’에 하나의 ‘새로운 영적 자극’을 불리일으키기 위해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필요성 또는 유용성’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sup>40)</sup>

#### 4. 카리스마의 승인 이후 법적 요소

카리스마의 진정성이 인정된 이후에 교구장 주교는 개인적으로 또는 축성생활을 위한 ‘자신의 대리인’(proprio vicario) 또는 ‘자신의 위임자’(proprio delegato)를 통해 설립자를 도와서 ‘회의 본성과 목적’이라는 설립의 주요한 특징을 명확히 해야 한다(참조: 제578조).<sup>41)</sup>

##### 4.1. 회의 본성(natura)

무엇보다 교구장 주교는 회의 본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성은 보통 단체를 승인하는 형태에 관계된 특징들을 의미한다. 회의 본성은 ‘수도회 또는 재속회’ ‘사도생활단’ ‘새로운 형식’(제605조), ‘성직자회’(clericale) 또는 ‘평신도회’(laicale), ‘남성들로 이루어진 회(會)’ 또는 ‘여성들로 이루어진 회’ 등이다. 이처럼 현재 축성생활 회의 범주 안에는 교회가 인정하는 다양한 본성과 유형의 회들이 있고, 이들을 구별하는 정확한 특징들이 있다. 특히 오늘날 교회 안

39) Cf. *Ibid.*, p.195.

40) Cf. *Ibid.*, p.196.

41) Cf. *Ibid.*, p.197.

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축성생활회의 새로운 카리스마의 대부분은 이전에는 없던 독창적이고 새로운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sup>42)</sup>

#### 4.2. 회의 목적(finalità)

교구장 주교는 설립자가 회의 ‘궁극적 목적’(그 단체가 설립 승인되어 교회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교회적 사명)을 분명히 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 목적이 다소 모호하거나 너무 일반적이어서 단체의 사도직을 모호하게 만드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sup>43)</sup> 회의 ‘정확한 목적’(un fine preciso)은 회의 정신, 즉 단체의 삶과 행동에서 통합 지점을 제시하여, 사도직을 수행할 때 영감을 주고, 카리스마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서, 단체가 주님의 삶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데 기여한다.<sup>44)</sup>

#### 5. 수도회성의 관행과 교회 권위의 확인 사항

관할 권위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① 설립자와 회원들의 교리, 신앙, 사상의 ‘정통성’(l’ortodossia)과 ‘삶의 증언’(la testimonianza della vita)

② ‘그룹 내에서 채택한 생활 방식’

③ ‘과장됨 또는 이상함의 부재’(l’assenza di esagerazioni o stravaganze). 그 예로 무분별한 자산 관리, 지나치게 엄격한 고행, 내적 법정과 외적 법정의 부당한 혼합, 외부인에 대한 절대적인 비밀 유지, 괴상한 신심 등을 들 수 있다.

④ 능력과 의지(disponibilità): 개별 교회의 삶의 전반적인 역동성에 자신의 은사를 통합하고, 교회에 존재하는 다른 ‘단체’(istituzioni)와 상호 작용 및 협력하려는 능력과 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활

42) Cf. *Ibid.*, pp.197~198.

43) Cf. *Ibid.*, pp.198~199.

44) Cf. *Ibid.*, p.199.

동과 카리스마에 내재된 긍정성과 선의에 대한 고려와 존중, 자신의 한계와 잠재력 안에서 개별 교회의 역사와 어느 지역의 문화를 수용하려는 능력과 의지

- ⑤ 양성의 내용과 방법
- ⑥ 공동체에 합체되는 방식
- ⑦ 교계의 지시에 대한 유순함
- ⑧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도직과 교회적 감수성<sup>45)</sup>

## 6. 소결론

수도회 설립을 위한 여러 법적 요소 중에서 특히 회헌의 작성과 카리스마의 식별과 승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헌은 장차 설립될 수도회의 신학적·교회법적 설계도이다. 회헌은 수도회가 회원들의 성화의 길과 교회의 공동선에 대한 기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청사진 역할을 한다. 이러한 회헌의 내용은 설립자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카리스마에 의해 규범화된다. 교회는 이러한 카리스마의 식별과 승인 권한을 교회의 관할 권위에 위탁하고, 식별을 위한 여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카리스마 승인 이후 수도회 설립의 법적 요소는 교회 권위에 의한 회의 본성과 목적의 제도화이다. 즉 성령에게서 오는 설립자의 카리스마는 교계제도라는 하나의 카리스마와의 만남을 통해 수도회 설립을 위한 모든 법적 요소가 승인받게 된다.

---

45) Cf. *Ibid.*, p.200.

### 제3장 수도회 설립의 법적 절차<sup>46)</sup>

#### 1. 공적 단체의 수도회 설립 청원

교구장 주교가 수도회 설립에 대해 성좌에 대한 ‘사전 서면 허가’(previous written permission)를 요청하기 전에, 공적 단체는 먼저 교구장에게 수도회 설립 청원을 한다. 장차 수도회가 되기를 지향하며 설립된 그리스도 신자의 공적 단체의 총원장은 카리스마의 충분한 성숙, 제도적 안정, 규모의 확대와 수적 증가에 도달하였을 때, 단체의 본원이 있는 교구의 교구장 주교에게 수도회 설립을 청원한다.<sup>47)</sup> 이때 공적 단체는 내부적으로는 ‘회의’(chapter), ‘총회’(general assembly) 또는 ‘회원들의 투표’(referendum of the members)를 통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교구장 주교에게 ‘회원들의 현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교구장 주교는 ‘교구설립 수도회를 설립하기 위해 수도회성에 보내야 하는 모든 문서(부록 1)’와 이 단체를 하나의 수도회로서 설립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공식 서한’을 성좌에 보내야 한다. 선교 지역의 교구들에서는 인류복음화성에, 동방교회에서는 동방교회성에, 기타 다른 경우에는 수도회성에 이러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sup>48)</sup>

#### 2. 1983년 교회법 제579조

##### 2.1. 개정전 제579조

제579조는 축성생활회 설립의 관할 권위가 누구인지, 설립 절차

46) 축성생활에 관한 교회법 조문(제573조~제746조)에는 교회법상 핵심 절차인 제579조를 제외하고는 그 밖에 새로운 수도회를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제3장에서는 제579조를 중심으로 수도회 설립의 절차를 고찰한다.

47) Cf. Conferenza Italiana Superiori Maggiori, *op.cit.*, p.202.

48) Cf. Victor George D'Souza, *op.cit.*, 78-81.

를 확정한다. 관할 권위는 명목상으로는 교구장 주교이고, 교구 직권자는 제외된다(참조: 제134조).<sup>49)</sup>

Episcopi dioecesani, in suo quisque territorio, instituta vitae consecratae formali decreto erigere possunt, dummodo Sedes Apostolica consultata fuerit.	Diocesan bishops, each in his own territory, can erect institutes of consecrated life by formal decree, provided that the Apostolic See has been consulted.	교구장 주교들은 사도좌와 의논한 다음에만 각기 자기 지역에서 축성생활회를 정식 교령으로 설립할 수 있다.
--	---	--

사도좌와 의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모든 수도회는 본성상 교회에 대한 성령의 선물이고, 카리스마는 사명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주교가 하나의 수도회를 설립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교구를 넘어서 전체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 수도 성소는 보편성을 지니고 교회의 보편성 안에서 성좌는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성좌는 전체 교회를 위한 규범들을 제공한다. 성좌는 수도회 설립의 중심에 있으므로 교구장 주교가 수도회를 설립할지를 판단하는데 그에게 마땅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sup>50)</sup>

## 2. 「교황청 답서」(2016년 5월 11일)<sup>51)</sup>

자의 교서 「카리스마의 진정성」(*Authenticum Charismatis*)에 관련된 「교황청 답서」(2016년 5월 11일)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49) Cf. Tomás Rincón-Pérez, *op.cit.*, p.1483.

50) Cf. Victor George D'Souza, *op.cit.*, 81.

51) *L'Osservatore Romano*(2016,5,16), p.8; *Communicationes* 48(2016), 56. 128~131; [https://www.vatican.va/roman\\_curia/secretariat\\_state/parolin/2016/documents/rc\\_seg-st\\_20160511\\_parolin-r-scritto-can579cdc\\_en.html](https://www.vatican.va/roman_curia/secretariat_state/parolin/2016/documents/rc_seg-st_20160511_parolin-r-scritto-can579cdc_en.html)(2023.4.21). 본 논문에서는 영어 원문 답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교구설립 수도회 설립에 대한  
교회법 제579조에 관한 일반 알현 답서  
(RESCRIPT EX AUDIENTIA CONCERNING  
CANON 579 OF THE CODE OF CANON LAW  
ON THE ERECTION OF A DIOCESAN INSTITUTES)

수도회성은 모든 새로운 축성생활회가 개별 교회 안에서 생겨나고 발전하더라도, 전체 교회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적절한 분별력 없이 교구 차원에서 새로운 축성생활회가 설립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음적 권고의 선언을 통한 축성의 구체적 특징을 정의하고 그 발전 범위를 식별함으로써 카리스마의 진정한 기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579조에 명시된 대로 새로운 교구설립 축성생활회의 설립을 진행하기 전에 수도회성과 의논하여 그 회의 미래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국무성 장관인 ‘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추기경(2016년 4월 4일)과의 일반 알현에서, ‘교회법 해석 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Legislative Texts)의 의견에 따라, 교구설립 축성생활회 설립 이전의 사도좌와의 의논은 유효 요건(ad validitatem)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수도회의 설립 교령은 무효가 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답서는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공포되고 2016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질 것입니다. 이후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2016년 5월 11일  
 국무성 장관  
 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추기경

위의 「교황청 답서」에 의해 교황청과 사전 협의가 없을 경우 교구장 주교의 축성생활회 설립 교령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답서는 교구장 주교가 새로운 축성생활회를 설립할 경우 수도회성과의 의논을 ‘유효성을 위한’(ad validitatem) 의무적인 절차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52)</sup> 교구장 주교가 수도회성과 의논 없이 자신의 교구에 축성생활회를 설립했을 때 수도회 설립 교령의 유효성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sup>53)</sup>

### 2.3. 자의 교서 「은사의 진정성」(AUTHENTICUM CHARISMATIS)<sup>54)</sup>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11월 1일 ‘자의 교서’ 형식의 교서를 통해 제579조(1983년 1월 25일 선포)의 본문을 수정했다. 교황청은 지난 2016년 교구장 주교는 새 수도회에 대해 교회법적 승인을 하기 전에 교황청과 상의하도록 교회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수정된 교회법에서는 교구장 주교에게 교황청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해 교황청 감독을 강화하였다. 수도 성소는 보편 성소이고 수도회 설립은 보편 교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좌 소관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설립 조

52) Cf. Alberto Perlasca, “L’interpretazione autentica delle leggi ecclesiali Rescriptum ex audentia SS.mi circa l’erezione degli istituti diocesani. di vita consacrata(can. 579)”, *Quaderni di diritto ecclesiale* 30(2017), 355.

53) Cf. Rodger J Austin, *op.cit.*, 194.

54) *communicationes* 52(2020), 333~334;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motu proprio/documents/papa-francesco-motu-proprio-20201101\\_authenticum-charismatis.html](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motu proprio/documents/papa-francesco-motu-proprio-20201101_authenticum-charismatis.html)(2023.4.2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https://www.cbck.or.kr/Documents/Pope/20210914?gb=title&search=%EC%9D%80%EC%82%AC%EC%9D%98%20%EC%A7%84%EC%A0%95%EC%84%B1>(2023.4.21).

항이 개정되기 이전 교구장 주교가 사도좌와 의논하고 설립하더라도 그 수도회 폐쇄는 교구장 주교가 아니라 사도좌에 유보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회의 은사는 보편 교회를 위한 것이기에 그들의 생명력은 보편 교회 권위가 판단해야 하는데, 개별 교회 교구장의 좁은 시각으로 판단한다면 보편 교회 차원에서 수도회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법 제579조 개정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은사의 진정성」**

(APOSTOLIC LETTER ISSUED “MOTU PROPRIO” BY  
THE SUPREME PONTIFF FRANCIS *AUTHENTICUM*  
*CHARISMATIS*, AMENDING CANON 579  
OF THE CODE OF CANON LAW)

“참다운 은사의 확실한 표징은 그 교회적인 특성에 있다. 곧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하여 하느님께 충실한 거룩한 백성의 삶에 조화롭게 통합되는 그 역량에 있다”(「복음의 기쁨」, 130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은사의 진정성과 창설자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자기 목자들에게서 적절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은사의 교회적 특성과 신빙성을 식별하는 일은 개별 교회 목자들의 권한에 속하며, 이 권한은 온갖 형태의 축성생활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특히 새로운 축성생활회와 새로운 사도생활단을 설립하는 일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주된 임무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개별 교회 안에 불러일으키시는 선물들에 올바르게 응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충분한 활력을 갖

추지 못하거나 무익한 단체가 함부로 생겨나지 않도록”(「수도생활 교령」, 19항) 조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좌는 새로운 교구설립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을 교회 내에서 어떻게 설립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판별하도록 목자들을 이끌어 주는 조언을 함으로써 그들을 도와 줄 소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후속 권고 「봉헌 생활」(*Vita Consecrata*)은 새로운 종류의 축성생활과 관련하여, “그들의 생명력은 교회의 권위가 판단해야 한다. 교회의 권위는 그들의 창립 목적의 진정성을 판별하고, 서로 유사한 수도회들의 난립을 막고 그에 따라 지나치게 작은 단체로 갈라지는 해로운 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12항)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새로운 축성생활회와 새로운 사도생활단은 사도좌가 직접 공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의 임무는 오로지 사도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주교가 행한 새로운 회와 단의 교회법적 설립은 참으로 교구의 범위를 넘어서 보편 교회 전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모든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은 개별 교회의 맥락에서 탄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성상 “교회에 주어진 선물로, 고립되거나 소외된 실재가 아니고 교회에 온전히 속한 것이다. 봉헌 생활은[···] 교회 사명의 핵심 요소로 교회의 중심에 자리하고”(「봉헌 생활의 해를 맞이하여 모든 봉헌 생활자에게 보내는 교황 교서」, III, 5항)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점들을 숙고한 뒤, 교회법 제579조를 개정하고 그 자리에 아래의 본문을 대체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구장 주교들은 사도좌의 사전 서면 허가를 받은 후 각

기 자기 지역에서 축성생활회를 정식 교령으로 유효하게 설립할 수 있다.”

본인은 자의 교서 형태의 이 교황 교서로 정해진 모든 것이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를 명령합니다.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라도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자의 교서로 정해진 것이 2020년 11월 10일부터 효력을 가지도록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게재됨으로써 공포될 것과 이후 공식 기관지인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 발표될 것을 명령합니다.

라테라노 궁에서 교황 재위 제8년  
2020년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  
프란치스코

새로운 수도회를 교회적으로 승인(recognition)하는 식별 과정에 교구장 주교는 사도좌와 함께한다. 사도좌와 교구장 주교의 동행 절차의 종착점은 교황청으로부터 교구장 주교가 그의 ‘공식 교령’(formal decree)을 유효하게(validly) 발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문서이다. 교구장 주교가 서면으로 이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제579조에 따라 수도회의 교회법적 설립은 무효이다.<sup>55)</sup>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 교서 「은사의 진정성」(*AUTHENTICUM CHARISMATIS*)에 따라 수정되어 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된 제579조의 본문<sup>56)</sup>은 다음과 같다.

55) Cf. Rodger J Austin, *op.cit.*, 196.

56) Cf. *Ibid.*, 195-196.

<p>Episcopi dioecesani, in suo quisque territorio, instituta vitae consecratae formali decreto valide erigere possunt, praevia licentia Sedis Apostolicae scripto data.</p>	<p>Diocesan bishops, each in his own territory, can validly erect institutes of consecrated life by formal decree, having received the previous written permission of the Apostolic See</p>	<p>교구장 주교들은 사도좌의 사전 서면 허가를 받은 후 각기 자기 지역에서 축성생활회를 정식 교령으로 유효하게 설립할 수 있다.</p>
---	---	--

### 3. 성좌에서의 절차

교구장 주교가 일반적으로 전체 서류를 ‘교황청 대사관’(Apostolic Nunciature)을 통해 성좌의 관할 부서에 보내면, 관할 부서는 사안(case)에 ‘접수 번호’를 부여하고, 적어도 두 명의 자문 위원에게 이 사안을 위탁한다. 이 자문 위원들은 서류를 검토한 후 자신들의 ‘서면 의견’(written votum)을 제출한다. 전체 서류는 또한 관할 부서의 위원들에 의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때때로 전체 서류는 장관(prefect), 차관(secretary),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 구성되는 수도회성의 고위직 위원회의에 제출되기 전에, 위원들과 자문 위원들로 구성된 내부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다.

그리고 수도회성은 회헌에 대한 중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헌에 대한 의견과 제안에 따라 수정한 회헌 3부를 교구장 주교에게 다시 보내고, 교구장 주교는 수도회성이 수정한 회헌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한다.

또한 수도회성은 ‘장애 없음’(Nihil Obstat)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교리와 신심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것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 서류’를 ‘신앙교리성’에 보낸다. 이때 만약 설립자나 첫 그룹의 기적들이나 환상들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신앙교리성은 이러한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한다.

수도회성은 단체의 회헌을 검토하면서 제573조의 모든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 단체에 관련한 다른 문서와 보고서를 조사한다. 그리고 수도회성은 교구장 주교에게 ‘현(現) 공적 단체’를 ‘교구

설립 수도회'로 설립하는 데에 '장애 없음'(Nihil Obstat)을 부여한다. 이때 수도회성은 교구장 주교에게 새 수도회의 회헌(즉 교구장 주교가 수도회성에 제출한 회헌이 아닌, 그 회헌을 수도회성에서 수정한 회헌)을 승인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때로는 수도회성은 주교에게 수도회성에서 이미 수정한 회헌 본문을 '시험적으로' 5년 동안 승인할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최종적으로 수도회성은 교구장 주교에게 새 수도회 설립 교령 사본 1부와 교구장 주교가 수정하고 승인한 회헌 사본(2부)을 수도회성에 보낼 것을 요청한다.<sup>57)</sup>

#### 4. 교구장 주교의 '공식 설립 교령'(Formal Decree of Election)

##### 4.1. 교령을 통한 수도회 설립

###### 4.1.1. 회헌 승인과 수도회의 설립 교령의 구별

회헌 승인과 수도회 설립은 별개의 '행정행위'(Administrative Act)이기 때문에, 회헌은 '수도회 설립행위 이전에 또는 수도회 설립행위와 함께' 승인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두 행위(회헌 승인과 수도회 설립행위)는 모두 수도회 설립 교령에 포함될 수도 있다.<sup>58)</sup>

###### 4.1.2. 공식 설립 교령

수도회 설립의 절차에 관하여 제579조는 오직 '공식 교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하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등 그러한 유형의 행위에 적합한 모든 공식적인 요건을 충족한 행정행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참조: 제51조).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교구장 주교가 (또는 경우에 따라 사도좌가) 설립 교령을 발하는 '행정행위'에 의해 해당 '수도회'에 교회법적 지위를 부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구장 주교가 설립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sup>59)</sup>

57) Cf. Victor George D'Souza, *op.cit.*, 82-83.

58) Cf. *Ibid.*, 85.

59) Cf. Tomás Rincón-Pérez, *op.cit.*, 1483-1484.

## 4.2. 수도회 설립 후 이전 서원의 효력 문제

### 4.2.1. 공적 서원으로 자동전환된다는 견해(수도회성, 1998)

수도회성이 수도회 본원 소재 교구장 주교가 단체를 수도회로 설립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 그 회원들과 관련하여 ‘형제회’(Fraternity)에서 이미 이루어진 종신서원이나 유기서원이 지금까지는 ‘사적 서원’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서원이 보편법과 수도회 고유법이 요청하는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교회법적 효력을 지닌 공적 서원으로 즉시 인정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것을 주교에게 요청한다. 요약한다면, 별도의 추가적인 필요조건이 없이 설립과 함께 사적 서원이 공적 서원으로 ‘자동 전환’(automatic transformation)된다. 따라서 그 수도회의 총원장과 다른 서원자들은 각각 교구장 주교와 총원장 앞에서 서원을 발할 필요가 없다.<sup>60)</sup>

### 4.2.2. 서원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견해(인류복음화성, 2005)

인류복음화성은 교령을 통해 ‘장애 없음’(Nihil Obstat)을 판정하면서 교구장 주교에게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1) 총원장은 수도회 설립 후 교구장 주교 혹은 그의 대리자 앞에서 회헌에서 승인한 서원 형식에 따라 종신서원을 새로 해야 한다. 다른 모든 회원들은 종신서원이든 유기서원이든 각각 총원장 또는 그의 대리자 앞에서 종신서원 또는 유기서원을 해야 한다.

2) 수도회의 재산은 교회법 규정, 수도회 고유법과 관련된 국가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질서정연하고 안전하게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sup>61)</sup>

### 4.2.3.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

그리스도 신자 단체가 수도회로 설립된 경우 서원을 새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신자 단체였을 때의 서원이 수도회 설립

60) Cf. Victor George D'Souza, *op.cit.*, 84.

61) Congregation for the Evangelization of Peoples, Letter granting the Nihil Obstat, Prot. 0516/05, 19 July 2005을 Victor George D'Souza, *op.cit.*, 83-84에서 재인용.

후 즉시 공적 서원으로 자동 전환되는지에 대해 교황청의 ‘두 관할 권위’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와 확인이 필요하다.

두 견해를 비교해 볼 때, 서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인류복음화성의 견해가 합리적인 것 같다.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인류복음화성의 결정이 최근의 것이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서원을 다시 하여 서원을 확실하게 해두는 편이 더 낫다고 본다. 따라서 서원을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좌 관할 권위들의 종합적 입장이 있기 전에는, 인류복음화성이 결정한 대로 서원을 다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둘째, 서원의 대상은 회헌에 규정된 복음적 권고이다. 그런데 단체가 수도회로 설립되면서 서원의 대상인 복음적 권고의 회헌상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약속을 한다’는 의미에서 서원을 다시 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본다.

## 5. 회원의 신분 변화

수도회 회원들은 교회에서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들’(또는 하느님께서 축성한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교회법적 신분을 획득한다. 수도회 설립 전에는 서원을 통한 그들의 복음적 선서는 중대한 법적 의미가 없는 사적인 특성을 띠지만, 설립 교령과 함께 그들은 수도자의 신분을 획득하고 그들의 선서는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sup>62)</sup>

## 6. 민법상 비영리 단체의 정관

가톨릭 수도회는 한국 민법상 비영리 단체로 주무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때 교회법상 ‘고정 세습자산’은 민법상 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위한 필수 기재 사항인 ‘기본 재산’의 개념과 맞물려 있다. 즉 사단이든 재단이든 교회 단체가 민

62) Cf. Victor George D'Souza, *op.cit.*, 86.

법상 비영리 법인 설립을 신청하려면 정관, 발기인 명단, 설립 취지서 등 여러 구비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규범인 정관에는 재산 목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법상 기본 재산이란 설립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립총회 시에 회원들의 의결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 또는 금전을 말한다. 이에는 ① 법인 설립 시에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 출연 등 무상 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 ③ 보통 재산(운영 재산) 중에서 이사회/총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④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등이 있다. 반면 기본 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목적 사업비와 그 운영 경비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운영 재산이라 한다.

이러한 법인의 존립 기초가 되는 기본 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 또는 권리의 포기과 증감 등 기본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기본 재산 처분”이라 한다. 기본 재산은 법인의 존립 기초가 되므로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거나 법인이 기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인 기관(사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와 정관 변경 및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변경 등기가 있어야 한다(공익 법인법 제11조 2항).

교회 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할 때는 교회법상의 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 특히 ‘고정 세습자산’과 이례적 관리 행위와 양도 행위의 유효성을 위한 규정이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 민법상의 적법한 절차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법상 적법한 재산 관리행위는 곧 민법상으로도 적법한 재산 관리행위가 될 수 있고, 거래의 안전과 교회 재산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이탈리아의 경우, 이탈리아 정부는 1984년 2월 18일 가톨릭교회와 맺은 개정 「라테란 조약」 7조(l'art. 7 dell'Accordo del 18

febbraio 1984 di revisione del *Concordato Lateranense*)에서 교회 단체에 속한 재산의 관리는 교회법에 규정된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이탈리아 법체계 내에서 교회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이 외에도 1985년 5월 20일 법률 222, 18항(l'art. 18 della l. n.222 del 1985)은 이탈리아의 교회 기관 및 재산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교회 기관에 의해 시행되는 법적 거래의 유효 또는 합법성을 위해, 교회법전과 법인 등록부에 근거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 또는 교회법적 통제의 결여를 인식하지 못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 민법상 인정되고 법인 등록부에 등록된 교회 단체가 교회법적 형식이 결여된 양도 행위를 행할 경우, 이는 교회법에 따라 무효로 간주되며, 동시에 이탈리아 민법에 따라서도 무효화된다.

## 7. 소결론

수도회 설립의 법적 절차 중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은 제579조 개정 전후의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제579조 개정 전 상황에서 교구장 주교는 수도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수도회성과 의논해야 했다. 그러나 만일 교구장 주교가 이러한 의논을 하지 않고 교구설립 수도회를 세운 경우, 그의 교령은 ‘불법(illicit)이지만 유효(valid)’했다.

제579조가 개정된 현재 상황에서 교구장 주교는 교구설립 수도회를 설립하기 전에(before) 반드시(must) 수도회성으로부터 ‘장애 없음’(Nihil Obstat)을 받아야 한다. 만약 교구장 주교가 이렇게 하지 않고 수도회를 세운다면 그 교령 자체가 ‘무효’(Invalid)가 된다. 사도좌의 사전 서면 허가를 통해 교구장이 자기 교구에 수도회를 설립할 수 있다.

### III. 결론

성령께서는 카리스마를 통해 교회에 생명을 주고 교회를 성화의 여정으로 인도한다. 이러한 카리스마를 통해 설립되는 것이 수도회의 특징이다. 설립자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선물인 카리스마의 일차적 수혜자이다. 카리스마는 전체 교회의 공동선을 지향하므로 카리스마의 최종적 수혜자는 교회 자신이기도 하다. 설립자의 카리스마는 교회 내에서 교회 권위에 의해 식별되고 승인된다. 이 과정에서 설립자의 카리스마가 아닌 설립의 카리스마만이 설립되는 수도회를 통해 교회에 받아들여진다. 교회법전은 이것을 회의 ‘세습자산’(참조: 제586조)이라고 하여 규범적으로 표현하였다. 수도회는 회 설립의 카리스마, 즉 회의 고유한 세습자산을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

교회법상 신자들은 단체 설립의 권리가 있다. 수도회도 하나의 단체이지만, 처음부터 수도회로 설립되기보다는 통상적으로는 그리스도교 신자 단체로 설립된 후 미래에 교회의 관할 권위에 의해 수도회로 승인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수도회 설립을 지향하는 그리스도 신자 단체를 설립할 때 정관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단체는 모든 단체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규범인 정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정관은 수도회의 근본규범인 회헌과는 구별된다.

수도회를 지향하는 단체가 수도회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회헌을 제정하고 이것이 교회 권위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수도회의 회헌은 고유법의 핵심인데, 설립의 세습자산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세습자산은 회헌에 의해 보존된다. 수도회 설립의 법적 요소로서 카리스마의 식별이 특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 교회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카리스마의 식별과 승인 이후에도 교회는 단체가 수도회로 설립되기 위한 또 다른 법적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수도회 설립의 법적 요소를 구비한 이후 단체는 수도회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절차는 해당 단체의 수도회 설립

청원으로부터 시작된다. 제579조는 수도회 설립 절차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의 교서’ 「은사의 진정성」(*AUTHENTICUM CHARISMATIS*)을 통해 이 조항을 개정하였다. 이 ‘자의 교서’로 인하여 개정 전 제579조의 이해와 해석, 실재에 대한 많은 이견과 논쟁은 종식되었다. 이제 수도회 설립은 사도좌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수도 성소가 보편 교회의 성소이고 회의 카리스마가 보편 교회를 위한 선물이라는 특성에 부합한다. 교구장 주교는 사도좌에 수도회 설립을 청원하고 사도좌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후 교령을 통해 수도회를 설립할 수 있다.

수도회 설립 후 이전 서원의 효력 즉 회원들이 그리스도교 신자 단체였을 때 한 서원의 효력에 관해 ‘수도회성의 관행’(1998)과 ‘인류복음화성의 관행’(2005)은 대비되므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교회의 현실은 전통적인 축성생활회들 이외에도 교회법상 승인된 축성생활회와 유사한 수많은 단체를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실재들을 축성생활의 새로운 형식의 하나로 승인하는 권한은 수도회의 설립과 마찬가지로 사도좌에게 유보되어 있다(참조: 제605조). 그리고 현재 ‘새로운 형식’이라는 것을 식별하고 승인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제573조의 축성생활의 본질적 요소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이다.

## [참고 문헌]

### 1. 교회 문헌

교황 베네딕토 15세, 『1917년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1917), Roma: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1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83년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1983.1.25.), 주교 회의 교회법위원회 번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수도생활에 관한 교회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

### 2. 단행본

Chiappetta, Luigi,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vol.I, 32011.

Conferenza Italiana Superiori Maggiori, *Questioni attuali per la vita e il governo de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7.

Hereford, Amy, *See I am making something new: new institutes, diocesan hermits and consecrated virgins and new forms of consecrated life*, Saint Louis(USA): RELIGIOUS LIFE PROJECT, 2018.

### 3. 정기간행물

Austin, Rodger J., “Commentary Motu Proprio of Pope Francis Authenticum Charismatic”, *The Canonist*, vol.11, no.2(2020), 189~196.

Daly, Brendan, “The Authority and Obligations of a Diocesan Bishop/Local Ordinary and a Religious Institute in his Diocese”, *The Canonist. Canon Law Society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vol.13, no.1(2022), 9~76.

D’Souza, Victor George, “Erection of a Religious Institute of Diocesan Right: Law and Praxis”, *Studies in Church Law* 1(2005), 56~63.

Holland, S., “New Institutes, Mergers and Suppression”, *Procedural Handbook for Institutes of Consecrated Life and Societies of Apostolic Life*, CLSA(2001).

\_\_\_\_\_, “Religious and Bishops as Custodians of Communion”, *The Jurist*, vol.62(2022), 312~340.

Perlasca, Alberto, “L’interpretazione autentica delle leggi ecclesiali Rescriptum ex

audientia SS.mi circa l'erezione degli istituti diocesani. di vita consacrata(can. 579)", *Quaderni di diritto ecclesiale* 30(2017), 351~357.

Sugawara, Y., "Concetto teologico e giuridico del 'carisma di fondazione' de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 *Periodica* 91(2002), 250~251.

#### 4. 학위논문

Tran, Lua, *THE CANONICAL AUTHORITY OF THE DIOCESAN BISHOPS OVER THE CONGREGATION OF THE DOMINICAN SISTERS OF SAINT ROSE OF LIMA (CIC, CC. 586, 594, 595)*, Doctorial Dissertation, Saint Paul University (Ottawa, Canada), 2021.

#### 5. 사전 및 편집단행본

Andrés, Domingo J., cmf, "CC.617~630", i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Vol.II/2(canons 460~746), Marzoa, Ángel / Miras, Jorge / Rodríguez-Ocaña, Rafael(eds.), Illinois(USA): Midwest Theological FORUM, 2004, pp. 1616~1661.

Jarrell, L. / Ward, D., "Procedures for Establishing an Institute/Society", in *Procedures and Documents for Canonical and Civil Administration in Institutes of Consecrated Life and Societies of Apostolic Life*, LRRCR(2007).

MCDERMOTT, Rose M., S.S.J., "CC.573-616", in *New Commentary of the Canon Law*, Beal, John P. / Coriden, James A. / Green, Thomas J.(eds.), New York (USA): Paulist Press, 2000.

Morrissey, Francis G., omi, "CC.631~633", i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Vol.II/2(canons 460~746), Marzoa, Ángel / Miras, Jorge / Rodríguez-Ocaña, Rafael(eds.), Illinois(USA): Midwest Theological FORUM, 2004, pp. 1662~1671.

Nieto, Juan Manuel Lozano, "Fondatore", in *Dizionario teologico della vita consacrata*, Goffi, Tullio / Palazzini, Achille(eds.), Milano(Italia): Editrice Ancora Milano, 1994, pp.756~767.

Paolis, Velasio de, "CC.673~683", i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Vol.II/2(canons 460~746), Marzoa, Ángel / Miras, Jorge / Rodríguez-Ocaña, Rafael(eds.), Illinois(USA): Midwest Theological FORUM, 2004, pp.1798~1831.

Rincón-Pérez, Tomás, "CC.573~606", i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Vol.II/2(canons 460~746), Marzoa, Ángel / Miras, Jorge / Rodríguez-Ocaña, Rafael(eds.), Illinois(USA): Midwest Theological FORUM, 2004, pp. 1451~1576.

Romano, Antonio, “Carisma”, in *Dizionario teologico della vita consacrata*, Goffi, Tullo/ Palazzini, Achille(eds.), Milano(Italia): Editrice Ancora Milano, 1994, pp.169~184.

Thériault, Michel, “CC.124-128”, i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Vol.I(canons 1~203), Marzoa, Ángel / Miras, Jorge / Rodríguez-Ocaña, Rafael(eds.), Illinois(USA): Midwest Theological FORUM, 2004, p.800

## 6. 인터넷 자료

Eileen C. Jaramillo, “The Holy See’s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 Religious Institute of Diocesan Right”, [www.academia.edu/5603261/ The\\_Holy\\_Sees\\_Requirements\\_for\\_Establishing\\_a\\_Religious\\_Institute\\_of\\_Diocesan\\_Right](http://www.academia.edu/5603261/The_Holy_Sees_Requirements_for_Establishing_a_Religious_Institute_of_Diocesan_Right) (2023.7.19).

[https://www.vatican.va/roman\\_curia/secretariat\\_state/parolin/2016/documents/rc\\_seg-st\\_20160511\\_parolin-rescritto-can579cdc\\_en.html](https://www.vatican.va/roman_curia/secretariat_state/parolin/2016/documents/rc_seg-st_20160511_parolin-rescritto-can579cdc_en.html)(2023.4.21).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motu\\_proprio/documents/papa-francesco-motu-proprio-20201101\\_authenticum-charismatic.html](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motu_proprio/documents/papa-francesco-motu-proprio-20201101_authenticum-charismatic.html)(2023.4.21).

<https://www.cbck.or.kr/Documents/Pope/20210914?gb=title&search=%EC%9D%80%EC%82%AC%EC%9D%98%20%EC%A7%84%EC%A0%95%EC%84%B1>(2023.4.21).

<https://chat.openai.com/>(2023.4.25).

[부 록]

## 교구설립 수도회 설립을 위해 ‘수도회성’(CIVCSVA)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문서 목록<sup>63)</sup>

### 1. 설립자와 초대 총원장의 이력(Curriculum vitae)

① 다음의 사항이 명백히 포함되어야 한다. 성명, 출생일과 장소,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의 날짜와 장소, 부모의 성명, 이수한 교육에 관한 사항, 단체 입회일, 유기서원과 종신서원 날짜, 설립자가 초대 총원장으로 선출되었다면 선출한 사람 및 선출 날짜, 임기(재직 기간), 현재 상황(또는 사망일), 기타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야 한다. 만일 설립자와 초대 총원장이 다르다면 초대 총원장을 임명 또는 선출한 사람도 명시해야 한다.

② 설립자가 어느 한 수도회의 회원이거나 회원이었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가 교회 학문을 공부한 장소. 이전 수도회에서의 수련기와 유기서원 날짜, 종신서원 한 날짜. 성품성사(聖品聖事)를 받은 날짜, 그가 수도회를 설립하기 위해 받은 허락의 종류. 설립자가 여성일 경우, 이전 수녀회에서의 수련기와 유기서원기를 시작한 날짜, 그리고 종신서원을 한 날짜와 그녀에게 허락된

---

63) 1~8의 목록은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① the information sheet of the congregation for the institute of consecrated life and for the societies of apostolic life. Religious Institute of Diocesan Right을 Victor George D'Souza, "Erection of a Religious Institute of Diocesan Right: Law and Praxis", *Studies in Church Law* 1(2005), 91~93, ② S. Holland, "New Institutes, Mergers and Suppression", in *Procedural Handbook for Institutes of Consecrated Life and Societies of Apostolic Life*, CLSA(2001), p.37; L. Jarrell / D. Ward, "Procedures for Establishing an Institute/Society", in *Procedures and Documents for Canonical and Civil Administration in Institutes of Consecrated Life and Societies of Apostolic Life*, LRCR(2007), pp.5~6; Eileen C. Jaramillo, "The Holy See's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 Religious Institute of Diocesan Right" [www.academia.edu/5603261/The\\_Holy\\_Sees\\_Requirements\\_for\\_Establishing\\_a\\_Religious\\_Institute\\_of\\_Diocesan\\_Right](http://www.academia.edu/5603261/The_Holy_Sees_Requirements_for_Establishing_a_Religious_Institute_of_Diocesan_Right)(2023.7.19.), ③ Alberto Perlasca, "L'interpretazione autentica delle leggi ecclesiali Rescriptum ex audientia SS.mi circa l'erezione degli istituti diocesani. di vita consacrata(can. 579)", *Quaderni di diritto ecclesiale* 30(2017), 356~357.

어떤 관면들을 명시해야 한다.

③ 특히 강조할 것은 설립자의 영감과 그가 성령의 움직임에 어떻게 행동했는가이다. 초대 총원장의 이름은 그리스도 신자의 공적 단체의 통치를 바라보게 한다. 아마도 한 명의 주교나 사제가 이 공적 단체를 시작했을 것이다. 초대 총원장은 보통 설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지만 이 공적 단체의 초기 역사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2. 신자들의 공적 단체로서의 설립 교령을 포함하여 이 단체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법적 보고서가 필수 문서 목록인데, 이 보고서(*relazione*)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 보고서는 이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교회 문서와 교회법에 따라 설립된 기준에 일치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스도 신자의 공적 단체로 설립된 것은 아주 중요한 단계이다. 그 교령은 본원(*the mother house*)이 위치한 곳의 주교에 의해 선포되었을 것이다. 교령이 선포된 후에, 회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스로를 유지하며, 새로운 회원을 이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 권위가 그 공적 단체를 설립했다는 문서(1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문서를 통해 설립 목적, 설립일과 장소, 새로운 설립을 승인한 교구장 주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단체의 역사에서 중요한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a) 회원에 대한 통계: 청원자, 수련자, (유기 및 종신) 서원자와 사제들의 성명과 나이, 서원 후보자 수와 다음 종신서원 및 유기서원 예정 날짜. 교구설립 수도회를 설립하려면 최소 40명의 서원한 회원이 필요하며, 이 중 과반수가 종신서원 상태이어야 한다.

b) 첫 수련소의 설립, 날짜 및 장소, 수련소 설립을 허가한 주교의 이름, 첫 수련자 수와 수련을 시작한 날짜, 첫 서원 지원자 수와 그들의 첫 서원 날짜, 수련장, 수련장과 함께 첫 회원들의 초기 양성을 담당한 첫 책임자들.

- c) 총회가 개최된 날짜.
- d) 최초의 회헌을 승인한 사람과 시기.
- e) 단체의 초기의 사도직과 현재 사도직.
- f) 회원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교구의 이름(단체의 다른 교구로의 발전과 확장).
- g) 단체의 고유한 영성과 특별한 영성.
- h) 성직 수도회의 경우 회원들이 성직을 위해 공부하고 양성을 받은 신학교.

3. 교회법에 따라 제정(또는 개정된) 최신 회헌(Constitution)과 회칙(Directories or complementary books) 3부(three copies): 특히 총회가 개최된 날짜와 회헌 초안을 승인한 주교와 날짜를 포함해야 한다.

4. 서원자와 수련자의 수도복의 사진: 이 사진은 축성의 표시이고, 수도복이 특정 회나 단(團)에 관계될 때 제669조에 의한 청빈서원을 증언한다. 또한 수도복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5. 채무를 비롯하여 회의 자산 현황

① 부채가 있다면 명시해야 하며, 그 이외에도 수도회 소유의 회원의 숫자와 은행에 있는 자금의 총액(미국 달러 또는 유로화 기준)이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이 목록이 요청되는 이유는 회가 경제적 자립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이 목록은 또한 회가 회원과 사도직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 준다. 그러나 아주 자세한 보고서는 요청되지 않는다.

6. 특별한 경험 및 특별한 신심(devotion)에 대한 설명과 소속 교구에 동일한 목적과 이름을 가진 수도회가 있는지의 여부: 이 요청은 단체 영성과 이 영성이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를 보여 준다. 성좌는 회의 교리, 신심, 기적들, 기도들에 관해 부적절한 것이 있

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만일 환상 등 설립자에 대한 특이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단체가 소속된 교구에 동일한 목적과 이름을 가진 수도회가 있다면, 수도회성은 이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한지 또는 이미 교구에 있는 회와 중복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

7.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과 함께 단체 본원 소재의 교구장 주교를 포함한 모든 관련 교구 주교가 수도회성에 직접 보내는 추천서. 특히 단체의 본원 소재지의 교구장 주교의 추천서는 새로운 회를 설립하는데 설립자와 교구장 주교에게 중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설명해야 한다.

- a) 단체의 유용성과 안정성
- b) 단체의 규율
- c) 전례 및 성사적 차원
- d) 교회적 감각과 교회 제도와의 협력
- e) 초기 및 지속적인 양성
- f) 재산 관리
- g) 여러 교구에 현존하는 어느 한 수도회에 대한 통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
- h) 수도회 설립에 관한 모든 비용으로 500유로(euros)를 수도회성에 송금해야 한다. 이 보증금은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정산된다.

8. 성좌설립 수도회로 설립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다. 그러나 교구설립 수도회가 다른 교구들이나 전 세계에 분포한다면 이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때 수도회성에 보내야 하는 서류는 교구설립 수도회를 설립할 때 수도회성에 보내야 하는 서류와 동일하다.

주의: 제579조가 개정되었지만, 성좌에 보내야 하는 문서 목록에는 변함이 없다.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수도회 설립에 관한 것’으로 구성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자료는 교회법 조문, 공의회 문헌, 교회 문헌, 교황청의 관행이다. 연구 방법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법체계 안에서 관련 내용을 분석·연구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은 교회의 건설, 성장, 발전에 이바지하는 수도회의 설립 방법과 사명의 이해이다.

제1장에서는 수도회 설립의 출발인 설립자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설립자는 성령의 선물인 카리스마를 받아, 새로운 수도회들이 탄생하도록 이끈다. ‘설립자의 카리스마’와 ‘설립의 카리스마’는 구별되는데, ‘설립자의 카리스마’ 중에서 교회 권위에 의해 식별되고 승인된 것만 수도회에 수용되어 ‘설립의 카리스마’가 되어 수도회의 ‘세습자산’(제578조)을 구성한다.

제2장에서는 수도회 설립의 사전 법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도회 설립의 사전 법적 요소에는 그리스도교 신자 단체, 회헌, 카리스마가 있다. 역사적으로 수도회 설립은 보통 그리스도 신자 단체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았다. 그리스도교 신자 단체는 사적 단체든 공적 단체든 정관이 있어야 하는데 “장차 수도회 설립을 지향하며”라는 문구가 정관에 기재되는 것이 합당하다. 교구장 주교는 이 단체를 감독할 권한이 있다.

회헌은 수도회 고유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규범이다. 카리스마는 성령의 선물인데, 성령께서는 설립자에게 카리스마를 허락하시어 수도회를 설립하도록 인도하신다. ‘설립의 카리스마’ 승인 이후 교구장 주교는 회의 본성과 목적이라는 설립의 주요한 특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3장에서는 수도회 설립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회법에는 수도회 설립의 방법에 관해 핵심 절차인 제579조 규정만이 존재한다. 이 조항은 2020년 11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 「은사의 진정성」(*AUTHENTICUM CHARISMATIS*)에 의해 개정되었다. 설립 절차 규정인 제579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개정 전에는 주교가 사도좌와 의논 후 자신의 교구에서 축성생활회를 설립할 수 있었다. ‘사도좌와의 의논’ 없이 교구장 주교가 축성생활회를 설립한 경우의 법적 효과’에 대해, 어떤 학자는 유효하다고 하는 반면, 어떤 학자는 무효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제579조에 의하면, 교구장은 반드시 먼저 사도좌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에만 자신의 교구에서 축성생활회를 설립할 수 있고, 사도좌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교구장의 축성생활회 설립은 무효가 된다.

수도회 설립은 교구장 주교의 공식적인 설립 교령에 의해 이루어지며, 회헌의 승인과 수도회의 설립 교령은 구분된다. 단체가 수도회로 설립된 경우 회원이 단체였을 때 발한 서원을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수도회성과 인류복음화성의 관행이 다르지만, 본 연구에 의하면 회헌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서원을 다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회원이 서원을 발하는 복음적 권고는 회마다 회헌에 구체화되고 서원은 그 의무와 권리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수도회의 교회법적 설립 이후 수도회는 교회의 공법인이 되어,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위임을 받아 고유한 사명을 수행한다.

수도회는 그 설립의 모든 과정과 설립 후의 과제에서 드러나듯이 설립 전이든 설립 후이든 교회의 친교 안에 있는 교회적 실재이다. 교회법 규정에 따라 교회 관할 권위에 의해 식별, 승인되어 설립되는 수도회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카리스마를 간직하면서 사명을 수행한다.

▶ 주제어: 설립자, 카리스마, 회헌, 축성생활회, 사도좌의 서면 동의, 축성생활의 새로운 형식.